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17173, 2021나1718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17173, 2021나17180(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8453 판결

전문

원고(병합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우형

피고(병합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1.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8453 판결

주 문

1. 원고(병합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병합된 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병합된 소를 통틀어 원고(병합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병합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3,3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폐쇄 또는 매수일까지 월 67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병합된 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9.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 8.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병합된 소의 청구기각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흥관, 판사 윤동연

별지